예 산 총 칙

2009년도 [제1회추경]

제 1 조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총계	868,958,224	26,068,747
일반회계	673,101,064	20,193,032
특별회계	195,857,160	5,875,715
공기업특별회계	32,149,522	964,48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149,522	964,486
기타특별회계	163,707,638	4,911,2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933,143	807,994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41,819,663	1,254,59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338,561	100,15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10,500	30,315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963	89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75,005,902	2,250,177
주택사업특별회계	2,052,919	61,5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80,630	20,419
경영사업특별회계	331,415	9,942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355,873	10,676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7,502	525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6,659,690	199,791
주차장특별회계	4,174,106	125,223
기반시설특별회계	1,324,771	39,743

제 2 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9,81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653,76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한다.

1. 총액인건비 2. 지방채상환 원리금

제 6 조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